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0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기관 및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정보공유를 위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자의 범위에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추가하고 의심정보공유 항목을 구체화하는 한편, 의심정보 공유시 정보의 파기·삭제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 방법을 규정함(승제2조 개정, 제10조의4 신설)
- 나.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지정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5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을 “제3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로 한다.

제2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감독원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계좌번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의 명칭 등 계좌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2. 이름,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계좌의 명의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3.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입금·이체·송금·출금 거래의 일시, 금액, 유형 등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법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이용자의 이름 및 고유식별정보
2. 제1호에 따른 이용자에게 제공한 전기통신번호,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의 제공 개시일로부터의 경과일수, 재판매(「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른 재판매를 말한다) 여부, 이용요금의 수납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④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이하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이라 한다)의 명칭, 인터넷주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자문서의 해시값(「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해시값을 말한다), 그 밖의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의 식별 및 특성에 관한 정보
2.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을 배포 또는 제어(지시, 명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으로부터 개인정보등을 전송받는 서버의 인터넷주소, 그 밖에 해당 서버를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을 탐지하거나 확인한 일시
4.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을 설치·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제공하거나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름,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 전기통신번호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⑤ 법 제13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하여 탐지한 피해의심거래 및 그 거래

의 특성, 행태에 관한 정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확인을 위해 제공·제출(전자적 방법으로 제공·제출하거나 사본을 제공·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여권,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위조·변조 또는 위작·변작된 신분증등에 관한 정보

가. 계좌의 개설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같은 조 제10호의 접근매체 및 그 밖의 매체·수단의 발급(재발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⑥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발생계좌 및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로서 이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2. 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거나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전기통신사기의 분석·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⑦ 법 제13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감독원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수사기관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⑧ 법 제13조의4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회사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⑨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이하 “통신사기정보”라 한다) 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통신사기정보에 제3자가 권한없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통신사기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위작·변작·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통신사기정보 취급·조회 권한의 부여에 관한 사항 및 통신사기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신사기정보 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⑩ 법 제13조의4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을 말한다.

⑪ 법 제13조의4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공받은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3. 정보를 제공한 사기정보제공기관 또는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파기 또는 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⑫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법 제13조의4제7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⑬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은 법 제13조의4제7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2. 조회하려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것

⑭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법 제1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방법, 시기 그밖에 정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⑮ 금융위원회는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5(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통신사기정보의 분석 및 제공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3. 통신사기정보의 유출, 통신사기정보 처리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법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

명을 관보에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정보공유분석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해산
· 폐업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공유분석기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 ----- ----- ----- ----- ----- -----. ---- <u>제3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3. <u>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u>
<u><신 설></u>	
<u><신 설></u>	<u>제10조의4(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 ① 법 제13조의4</u>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감독원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자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계좌번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의 명칭 등 계좌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2. 이름,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계좌의 명의인

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3.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입금·이체·송금·출금 거래
의 일시, 금액, 유형 등 거래내
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정보

③ 법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이용자의 이름 및 고유식별
정보

2. 제1호에 따른 이용자에게 제
공한 전기통신번호, 전기통신
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
2조제6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의 제공 개시일로부터
의 경과일수, 재판매(「전기통
신사업법」 제38조에 따른 재
판매를 말한다) 여부, 이용요
금의 수납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
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④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 응용프
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하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
이라 한다)의 명칭, 인터넷주
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
터넷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
다), 전자문서의 해시값(「전
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자문서의 해시값을
말한다), 그 밖의 개인정보유
출프로그램등의 식별 및 특성
에 관한 정보

2.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을
배포 또는 제어(지시, 명령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으로
부터 개인정보등을 전송받는
서버의 인터넷주소, 그 밖에
해당 서버를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을
탐지하거나 확인한 일시

4. 개인정보유출프로그램등을
설치·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제공
하거나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름,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 전기
통신번호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정보

⑤ 법 제13조의4제1항제4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하여 탐지한 피해의심거래
및 그 거래의 특성, 행태에 관
한 정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
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본
인의 확인을 위해 제공·제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제출하거나 사본을 제공·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여권,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위조·변조 또는 위작·변작된 신분증등에 관한 정보

가. 계좌의 개설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같은 조 제10호의 접근매체 및 그 밖의 매체·수단의 발급(재발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
해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⑥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
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발생계좌 및 사기이
용계좌에 관한 정보로서 이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2. 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전
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것
으로 강하게 의심되거나 해당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전기통신사기의 분석·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한다)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대응에 필수적인 정보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정보

⑦ 법 제13조의4제3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감독원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
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
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
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
업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
하여 고시하는자

3. 수사기관

⑧ 법 제13조의4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
보이용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1. 금융회사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자

⑨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이하 “통
신사기정보”라 한다) 처리의 안
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
적·관리적 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
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통신사기정보에 제3자가 권한없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통신사기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위작·변작·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통신사기정보 취급·조회 권한의 부여에 관한 사항 및 통신사기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신사기정보 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법 제13조의4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을 말한다.

⑪ 법 제13조의4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3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공받은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3. 정보를 제공한 사기정보제공기관 또는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파기 또는 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⑫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법 제13조의4제7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⑬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
이용기관은 법 제13조의4제7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가 정보
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
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회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조회하려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것

⑭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법 제13
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방법,
시기 그밖에 정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⑮ 금융위원회는 제14항의 규정
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세
부 운영기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5(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통신사기정보의 분석 및 제공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및 인력을 갖추어 있을 것

3. 통신사기정보의 유출, 통신사기정보 처리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

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법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관보에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정보공유분석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해산·폐업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공유분석기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취소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